

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청소행정과)

의안번호	제 157 호
제 출 자	성북구청장 (2023. 8. 29.)
의 안 명	2023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2022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2023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연도 : 1995년
- 2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2조
- 3) 설치목적 :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쓰레기 감량 목표
- ※ 재원조성 :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판매수입의 일부
- 4) 사업내용
 -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 사업

나.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개요

- 1) 운용계획 변경 사유
 - 가)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(증 10,327천원)
 - 기타사업수입 및 이자 증가(증 5,926천원)

- 재활용 관련 사업 지출 감소(감 4,401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1년도 말 조성액(A)	2022년도 조성계획			2022년도 말 조성액(A+B)
		수입	지출	증감(B)	
당초계획	40,414	15,344	8,560	6,784	47,198
결산반영	40,414	21,270	4,159	17,111	57,525
증감액	-	5,926	▽4,401	10,327	10,327

나) 2023년도 수입계획 증가(증 53,042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 (B-A)	증감내용
계	29,736	82,778	53,042	
2023년 기타수입	28,836	79,358	50,522	- 재활용품판매대금 기 금의 수입금 조정으로 인한 수입 및 이자 증가
이자수입	900	3,420	2,520	

- 재활용선별장 대행용역 계약(2022.12.29.)

-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 수입 산출 변경

기존	변경
유가성 재활용품 (kg) × 10원 (폐비닐(EPR) 잔재폐기물 제외)	▶ 혼합수거재활용폐기물(kg) × 40% × 15원

다) 2023년도 지출계획 감소(감 13,92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기정예산(A)	변경예산(B)	증감액 (B-A)
계	41,510	27,590	▽13,920
심의위원 운영수당	560	840	280
폐형광등/폐건전지 등 수거함 교체	9,750	9,750	-
재활용품 보관장비구입	6,000	2,000	▽4,000
재활용품 수거활성화를 위한 사업홍보물 제작	10,000	10,000	-
재활용정거장용 분리수거함 구매	10,200	-	▽10,200
재활용정거장 관련 홍보물 제작	5,000	5,000	-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
예정에 따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의위원회
심의수당 반영(증 280천원)
- 정릉도시관리지원센터 보강공사, 대행업체 차량통행 등
여건 변경으로 컨테이너 구입 대신 장비 구입으로 변경(감
4,000천원)
-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분리수거함 구매 예산 확정으로
삭감(감 10,200천원)

2) 2023년 운용계획 변경 내역

가) 기금조성총괄 변경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2년도 말 조성액(A)	2023년도 조성계획			2023년도 말 조성액(A+B)
		수입	지출	증감(B)	
당초계획	47,198	29,736	41,510	▽11,774	35,424
변경계획	57,525	82,778	27,590	55,188	112,713
증감액	10,327	53,042	▽13,920	43,414	77,289

나) 자금수지총괄 변경

(단위 : 천원)

수입계획				지출계획			
항목	당초계 획수입 액	변경 수입액	증감	항목	당초계 획지출 액	변경 지출액	증감
합계	76,934	140,303	63,369	합계	76,934	140,303	63,369
예치금화수	47,198	57,525	10,327	예치금	35,424	112,713	77,289
이자수입	900	3,420	2,520	비용자성 사업비	41,510	27,590	▽13,920
기타수입	28,836	79,358	50,522	이 하 여 백		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,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제2항¹⁾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 당초계획 7,693만원보다 6,336만원(82.37%)이 증액된 1억4,030만원으로 변경되어,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.
- 성북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22조²⁾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재원은 성북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

제22조(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) ①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(이하 이 조에서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(개정 2020.12.31.)

1. 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
2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(개정 2020.12.31.)
3. 그 밖의 잡수입 등 (개정 2020.12.31.)

구가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,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등이며,

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·선별에 따른 장비, 물품구입 및 기
타 소요비용 등임.

-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도 결
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, 「지방자
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
조례」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20.12.31.)

1. 재활용품 수집·선별에 따른 장비,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
2. 그 밖의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
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(개정 2020.12.31.)